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와 관련한 중국법원의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China

육영춘**

Ying-Chun Lu

하충룡***

Choong-Lyong Ha

한나희****

Na-Hee Han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제도
 - III.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에 관한 중국법원의 사례검토
 - I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뉴욕협약, 비내국판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가능성

* 본 논문은 2019년 한국중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주저자,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happyeverday@naver.com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choongha@pusan.ac.kr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BK+ 사업팀 연구원, trade@pusan.ac.kr

I. 서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더욱 침해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이러한 분쟁은 국내·외 상거래임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상거래의 증가에 따라 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과 소송외적 방법으로 조정, 알선, 중재가 거론된다. 국제상거래는 2개국 이상이 관여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국가를 관할지로 할 것인지,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의 결과를 관계 당사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집행 문제를 남긴다. 국제소송의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관할 합의에 관한 협약이 있으나 아직 가입한 국가는 없는 반면,¹⁾ 외국중재판정에 관하여는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²⁾이 있어 국제소송보다 승인과 집행에 있어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특히,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선정,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심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과 1992년 외교관계 수립한 이후 2020년 현재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25.1% 수입은 21.3%로 교역량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³⁾ 또한 한·중 FTA를 체결한 이후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분쟁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⁴⁾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이는 역으로 분쟁가능성이 크게 상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도와 그와 관련한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박규용·서세걸은 중국의 중재관련 입법체계가 혼합체제로 되어있

1)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9.12, p.440.

2) 현재 뉴욕협약의 체약국은 163개국임, 접속일 2020.4.28,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status2

3)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참고, 접속일 2020.3.15,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

4) 오원석·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 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6, p.163.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법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⁵⁾ 오원석·이경화, 이정·박성호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법제도에 관한 연구와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대해 다루었다.⁶⁾ 쑤쇼링은 뉴욕협약이 중국에서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뉴욕협약의 실상을 판례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⁷⁾ 신지연·이정표는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를 다루고 있으며,⁸⁾ 윤성민·김종철의 연구에서는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다루면서 뉴욕협약상 비국내중재판정을 적용 범위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⁹⁾ 임희 외 6인은 중국의 중재판정 집행거절의 현황 및 문제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¹⁰⁾ 하현수는 중국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¹¹⁾ 이외에도 중국과 홍콩, 대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법제도나 사례연구를 통하여 쟁점사항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재법의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다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판례를¹²⁾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

- 5)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6, pp.49-70.
- 6) 오원석·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 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6, pp.161-181.
이정·박성호,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7.6, pp.169-190.
- 7) 쑤쇼링,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3, pp.489-521.
- 8) 신지연·이정표, “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4, pp.23-51.
- 9) 윤성민·김종철, “중국에서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6, pp.67-89.
- 10) 임희·신도명·강화·장건·오정정·송린빈·김현아, “중재판정 집행거절의 현황 및 문제”,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12, pp.311-355.
- 11) 하현수,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6, pp.59-86.
- 12)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례는 다음과 같이 총 31건으로 집계되었다. ①영국 Glencore회사의 사례 ②싱가포르 Yideman Asia Pte Ltd.의 사례 ③미국 GM회사의 사례 ④Zublin의 사례 ⑤Vysanthi Shipping Company의 사례 ⑥Future E.N.E의 사례 ⑦한진해운의 사례 ⑧Cosmos Marine Management의 사례 ⑨Peter Schudes의 사례 ⑩Bunge Marine Management의 사례 ⑪PepsiCo의 사례(제111/2003호) ⑫PepsiCo의 사례(제076/2002호) ⑬신월화학공업주식회사의 사례(도교 04-5호) ⑭First Investment Corp의 사례 ⑮China Shipping Development Co.,Ltd.의 사례 ⑯신월화학공업주식회사의 사례(도교 04-5호) ⑰써브웨이의 사례 ⑱Hemofarm DD의 사례 ⑲VOEST-ALPINE의 사례 ⑳Concordia Trading B.V.의 사례 ㉑베네룩스인테리어 사례 ㉒오춘영의 사례 ㉓Mongolian-Edodora Co.,Ltd.의 사례 ㉔신월화학공업주식회사의 사례(도교 07-11호) ㉕ALSSTOM Technology Ltd.의 사례 ㉖Western Bulk Pte Ltd.의 사례 ㉗Proton Auto Co., Ltd.의 사례 ㉘조래신생회사의 사례 ㉙Ailebao Cotton Company의 사례 ㉚Noble Resources International Pte Ltd.의 사례 ㉛Palmer Maritime Inc.의 사례. (中國裁判文書網 <http://wenshu.court.gov.cn/>, 北大法寶 <http://www.pkulaw.cn/>의 자료를 토대로 수집 및 정리)

Ⅱ.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제도

2017년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¹³⁾ 국제협력 정상회의에서 국제협력과 해외투자 등에 관한 상업적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중국의 국제상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파악되며 국제상거래 증가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하여 특히, 중재제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중국 내에서 어떻게 승인되고 집행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 중국법원의 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1987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기본적으로 뉴욕협약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이 가입을 계기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중국은 「중재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중국이 가입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¹⁴⁾(이하 「1987년 통지」) 등 여러 법제를 시행하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무역개방을 통해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민사분쟁도 급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판단기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중재판정의 판단기준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에¹⁵⁾ 따르면 외국중재판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이어야 한다. 즉,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 여부를 ‘판정을 내리는 국가가 외국’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이는 국제상사중재 입법 및 실행에서 국제상사중재판정의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한다.¹⁷⁾ 두 번째 기준은

13) 2013년 중국주석 시진핑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관련된 중요한 협력 구상을 제안했다. 지난 3년 동안 ‘일대일로’의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환영 받고 높이 평가되었다. 2017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은 베이징에서 “일대일로”국제 협력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접속일 2020.2.15, <http://www.yidaiyilu.gov.cn/>

14) 關於執行我國加入的<承認及執行外國仲裁裁決公約>的通知.

15) 뉴욕협약 제1조 제1항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으로서 국가,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16)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에만 적용되므로 외국중재판정과 내국중재판정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중재판정의 국적의 문제이다.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286.)

‘집행국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판정, 즉 비내국판정이라고 정의하였다.¹⁸⁾ 그러나 비내국판정의 범위에 대한 각 국가의 법이 불일치로 비내국판정에 대한 논의가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⁹⁾

중국의 국내법은 국적판단에 관한 규정 없이 중국의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국내중재판정과涉外중재판정을 달리 취급한다.²⁰⁾ 즉, 중국의 법규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중재²¹⁾’ 및 ‘涉外중재²²⁾’와 외국의 법규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중재(국외중재)’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외국중재’이다.²³⁾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있어 주요한 법률적 근거인 「민사소송법」 제283조에²⁴⁾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신청 및 집행의 전제조건은 ‘외국중재기구의 판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중재기구의 소재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언상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판단기준과 뉴욕협약의 판단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중국에는 외국중재판정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중국은 1995년 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涉外중재 및 외국중재사항에 대한 처리의 문제에 관한 통지」²⁵⁾(이하 「1995년 통지」)에서 ‘외국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통지의 주요내용은 주로涉外경제(涉外經濟) 분쟁의 중재판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인민법원의 보고제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즉, ‘외국중재’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통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제도는 중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거부 전에 그러한 거부 의견을 상급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급법원인 최고인민법원에서 인정하는 거부사유만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17) 趙秀文, “非內國裁決的法律性質辨析”, 「法學期刊」, 2007年 第10期, 2007, p.16.

18) 신지연·이정표, “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4, p.27.

19) 윤성민·김종철, “중국에서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6, p.72.

20) 중국 중재법 제65조.

21) 중국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의함.

22) 중국 민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함.

23) 卞少卿,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p.500.

24)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 중국 인민법원의 승인 및 집행이 필요한 ‘국외중재기구의 판정’,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및 재산소재지에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혹은 호혜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5) 法釋 [1995] 18号, 「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處理与涉外仲裁及外國仲裁事項有關問題的通知」.

26) 卞少卿, 전계논문, p.493.

뉴욕협약의 제1조 제3항은 상호주의 유보선언²⁷⁾ 및 상사유보선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및 한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라고 인정되는 분쟁에 한한다.²⁸⁾ 반면, 중국에서 ‘상사’에 대한 해석은 ‘계약성 및 비계약성의 상사법률관계’로 보고 있다.²⁹⁾ 또한 뉴욕협약 제7조 제1항에³⁰⁾ 의거하여 외국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뉴욕협약은 집행신청인이 그보다 유리한 법령으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³¹⁾

2.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법적인 근거

중국에서 중재에 관한 입법체계는 내부적 관계를 규율하는 중재법과 외부적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 그리고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규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은 1987년부터 뉴욕협약이 발효되었고 가입과 동시에 상호주의 유보선언 및 상사유보선언을 하였다. 즉, 중국은 상호주의의 기초에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또는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한 계약성 및 비계약성의 상사법률에 관한 분쟁에 뉴욕협약을 적용한다.³²⁾

중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법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1987년 통지」를 발표하였다.³³⁾ 이후에 1991년 「민사소송법」을 시행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중국민사소송제에 도입하였고 「1995년 통지」를 통하여 지방법원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처리 규정을 강화시켰다. 1998년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비용과 심사기한 문제의 규정」(「關於承認和執行外國仲裁裁決收費及

27) 뉴욕협약 제1조 제3항에 따라 뉴욕협약의 가입국에게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용길,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12, p.9.)

28) 그러나 상호주의 유보선언의 경우, 당사자의 국적과 무관하므로 고전적 의미의 상호주의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뉴욕협약의 적용범위를 좁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상사유보선언의 경우에는 유보선언을 한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라고 인정되는 법률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재합의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목영준, 전게서, p.286.)

29) 「1987통지」 제2조. “계약성 및 비계약성의 상사법률관계”는 외국투자자와 투자국정부간의 분쟁을 제외한 계약, 권리침해와 관련된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제상의 권리의무관계이다.

30) 뉴욕협약 제7조 제1항. 이 협약의 규정은 체약국에 의하여 체결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다자 또는 양자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또한 어떠한 관계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적용이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나 조약에 인정된 방법과 한도 내에서 그 판정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준하지도 아니한다.

31) 목영준, 전게서, p.287.

32)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6, p.54.

33) 이 통지에서는 관할, 신청기한, 승인 및 집행의 심사표준 등을 포함하여 뉴욕협약에 대한 적용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審査期限問題的規定」, 이하 「1998년 규정」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중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토대가 되는 여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관한 주된 법적근거로 중국인민법원의 승인 및 집행이 필요한 ‘국의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당사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및 재산소재지에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혹은 호혜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 제546조는 “중국법원의 재정을 통해 승인을 받았던 중재판정에 한하여 중국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및 집행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차례대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 승인을 신청하는 동시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승인여부에 대한 심사만 하고 재정(裁定)³⁴⁾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외국중재판정과 관련하여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심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만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1998년 「중국대만지구의 관련 법원에서 내린 민사판결의 승인에 관한 중국인민법원의 규정」(「關於人民法院認可中國台灣地區有關法院民事判決的規定」)을 공표하였다. 이 규정의 제19조에³⁵⁾ 따라 당사자는 대만의 중재판정부에 내린 중재판정을 중국의 관할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³⁶⁾ 중국에 홍콩 및 대만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홍콩은 1842년부터 영국에 할양(割讓)되었기 때문에 1977년부터 뉴욕협약을 적용하였으며 중국에 홍콩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뉴욕협약을 근거로 집행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시기에 총 13건의 홍콩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중국법원으로부터 승인 및 집행을 받았다.³⁷⁾ 그러나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중재판정은 영토적 기준으로, 즉 하나의 국가 내부에 있는 상이한 지역의 판정으로 뉴욕협약에 근거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대표는 1999년에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안배」(「關於內地與香港特別行政區相互執行仲裁裁決的安排」, 이하 「홍콩안배」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중국과 홍콩의 중재판정을 상호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제공하였다.³⁸⁾

34) 재정(裁定)은 한국의 결정과 유사한 것으로 중국에 결정이라는 형식의 재판이 따로 존재하므로 결정 또는 판결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다. 손한기, “중국 민사집행절차 개관”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p.508.

35) 대만지구 민사판결 및 대만지구 중재기구의 중재판정의 승인 신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승인된 대만지구의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은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6) 성성·하현수, “양안(兩岸)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아태경상저널」 제9권 제1호,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7, p.33.

37) 하현수, 전제논문, p.141.

38) 하현수, “양안사지(兩岸四地)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4.5, p.139.

3.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한국은 1973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자동적 승인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³⁹⁾ 중국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승인 및 집행이 이루어진다.⁴⁰⁾ 이하에서는 중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신청서류, 신청기간, 비용부담 등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신청인의 여권, 기업의 사업등록증 등), 위탁서(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변호사나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인대표의 신분증명서(위탁서, 소송문서상 서명한자와 동일), 신청서, 증거자료⁴¹⁾ 등 서류를 준비하여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⁴²⁾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뉴욕협약의 제5조, 즉 ‘집행거부사유’에 따라 승인 및 집행여부를 재량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라 한다)가 판정한 제10334/AMW/BWD/TE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의 의견제청에 관한 회신’에서 “제출된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보완하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⁴³⁾ 따라 실무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국법원은 바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⁴⁾

다음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1987년 통지」 제5조와 「민사소송법」 제239조를 검토하여 보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신청기한은 중재판정서에 제시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이다. 중재판정서에서 이행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서의 발효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 신청시효의 중지, 중단은 소송시효의 중지,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⁴⁵⁾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재정하여야 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을 시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995년 통지」에

39) 한국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에서 확정된 권리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자동으로 승인되고 한국법원의 집행가능 선언을 거쳐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박설아,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 - 집행가능성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7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8.7, p.69.)

40) 쑤쇼링, 전제논문, p.505.

41)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중재합의서 및 중재조항이 있는 계약서, 중재판정서, 거래기록(이메일, 팩스, 우편 등) 등의 자료를 일컫는다.

42) 「민사소송법」 제264조, 「<중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 제523조, 뉴욕협약 제3조, 뉴욕협약 제4조.

43) [2004] 민사소송법 第6号, 最高人民法院關於不予執行國際商會仲裁院10334/AMW/BWD/TE最終裁決一案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03.15, <https://www.pkulaw.com/chl/104463.html>

44) 쑤쇼링, 전제논문, p.507.

45) 쑤쇼링, 전제논문, p.509.

의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끝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비용 산정 및 책임 부담과 관련하여 「1998년 규정」에 의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만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신청을 접수할 시 예약금 500위안을 납부하여야 한다.⁴⁶⁾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집행금액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⁴⁷⁾ 승인 및 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신청비용은 피집행인이 부담한다. 승인만 진행하고 집행을 거부하거나, 승인 및 집행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500위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청인에게 반납한다.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중국법원의 사례검토

뉴욕협약을 수용하고 있는 중국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뉴욕협약 제5조⁴⁸⁾에 규정한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 외에 중국의 집행절차와 관련된 규정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뉴욕협약 제5조 이외에 조

46) 「1998년 규정」 제1조.

47) 명시적인 집행금액이 없는 경우, 건당 50~500위안을 납부한다. 명시적인 집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00위안을 넘지 않으면 건당 50위안을 납부하고 10,000위안부터 500,000위안까지 1.5%, 500,000위안부터 5,000,000위안까지 1%, 5,000,000위안부터 10,000,000위안까지 0.5%, 10,000,000위안 이상은 0.1%를 납부하여야 한다.

48)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 a.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 이든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 b. 판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변론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 c. 판정이 중재위탁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위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위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위탁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 d.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e.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판정의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a.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일 경우, 또는
 - b.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다.⁴⁹⁾

중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에 대하여 엄격한 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중급인민법원은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일례로 2005년 최고인민법원은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이 내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신청에 대한 회신’에서⁵⁰⁾ 중급인민법원이 해당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중국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사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판단은 거부사유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부신청을 기각하였고 중급인민법원은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TS해마로 주식회사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례’에서⁵¹⁾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고급인민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두 가지 의견⁵²⁾의 불일치로 판단내리기가 어려워 최고인민법원에서 집행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외국중재판정은 승인 및 집행에 거부사유가 없으므로⁵³⁾ 승인 및 집행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2015년 ‘지멘스국제

49) 강수미,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뉴욕협약상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 제32호, 연세법학회, 2018.12, p.111.

50) [2001] 민四他字 第12号, 最高人民法院關於對海口中院不予承認和執行瑞典斯德哥爾摩商會仲裁院仲裁裁決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3.20, <https://www.pkulaw.com/chl/1224979098644900532.html?Customer=tyc>

51) [2005] 민四他字 第46号, 最高人民法院關於是否承認和執行大韓商事仲裁院仲裁裁決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3.21,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Gid=79144

52) 해당 사건에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두가지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다수 의견: 대한민국 중재법 제23조 제1항에서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사용할 언어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 없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은 피신청인에게 한국어로 통지를 발송한 것이 대한민국 중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뉴욕협약 제5조의 거부사유가 없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04113-0004호의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되어야 한다. ②소수 의견: 해당 사건에 양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통지의 발송은 유효하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이 그 국가가 체결한 국제조약과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약을 적용해야 함을 지적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의 규정에 따라 패소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국국민 또는 법인에게 통지에 관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중국의 언어습관을 존중하여 중국어 번역본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발송한 통지는 적절한 통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뉴욕협약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제04113-0004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2005] 민四他字 第46号, 最高人民法院關於是否承認和執行大韓商事仲裁院仲裁裁決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3.21,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Gid=79144)

53) 최고인민법원은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규칙으로 합의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규칙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중재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를 발송, 또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해당 외국중재판정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의 사유가 없으므로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고급인민법원의 다수의견과 같이 승인 및 집행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05] 민四他字 第46号, 最高人民法院關於是否承認和執行大韓商事仲裁院仲裁裁決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3.21,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Gid=79144)

무역(상하이)유한회사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례에 대한 회신'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다.⁵⁴⁾ 이와 같이 중국의 판례상에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를 위하여 엄격한 보고제도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급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판단할지라도 최고인민법원이 심사에서 거부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중급인민법원은 해당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1.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이하에서는 뉴욕협약 제5조의 규정상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중국법원이 어떻게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뉴욕협약에 규정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는 제5조 제1항의 집행 피신청인이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는 다섯 가지의 사유와 제5조 제2항의 집행국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두 가지 사유를 포함하여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법원에서 다루었던 총 31건의 거부사례 가운데 관련 있는 몇몇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행위능력의 결여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의 준거법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없거나 중재합의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약정된 법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집행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⁵⁵⁾

우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Glencore 회사(이하 "Glencore")와 重慶機械設備進出口公司(충칭 기계설비수출입회사, 이하 "충칭기계")의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⁵⁶⁾ 최고인민법원은 Glencore와 충칭기계 직원인 손씨와 체결한 계약은 회사의 승인 없이 한 행위로 회사대리인의 권한도 없으며 계약서상 회사직인 또한 날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에 따라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를 통하여 중재합의시 당사자의 능력 즉,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써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독일 Zublin 국제유한회사(이

54) [2015] 民四他字 第5号, 最高人民法院關於西門子國際貿易(上海)有限公司申請承認與執行外國仲裁裁決一案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04.23., <https://www.pkulaw.com/chl/1befa4c6ebbf4182.html>

55)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56) [2001] 民四他字 第2号, 關於對英國嘉能可有限公司申請承認及執行英國倫敦金屬交易所仲裁裁決一案有關問題的請示, 접속일 2020.3.25, http://www.bbzcw.cn/page225?article_id=142

하 “Zublin사”)와 무석 無錫沃可通用工程橡膠有限公司(위커통용공정고무유한회사, 이하 “위커고무”)의 사례⁵⁷⁾에서57) 최고인민법원은 ‘Zublin사와 위커고무 간 중재합의 효력확인신청의 의견제청에 관한 회신’에서 중국 중재법에서는 유효한 중재합의는 명확한 중재의사의 표시, 중재조항 또는 중재기관의 지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양 당사자는 명확한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았기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음으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에 따라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해당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효한 중재합의를 위하여 중국 중재법상 요구하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방어권의 침해

패소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이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⁵⁸⁾ 또한 방어권의 침해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공질서위반에도 해당된다.⁵⁹⁾ 이와 관련하여 ‘Cosmos Marine Management의 영국 런던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 사례’에서⁶⁰⁾ 신청인은 타 회사(제3자)에 위탁하여 20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자메일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중재인 선정 및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반면, 피신청인은 관련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자메일을 수신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뉴욕협약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패소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방어권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자메일에 대한 수신증거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신증거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중재인의 권한유일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중재합의의 범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그 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사유에 속한다.⁶¹⁾ 반면, 중재인의 권한

57) [2003] 民四他字 第23号, 最高人民法院關於德國旭普林國際有限責任公司与无錫沃可通用工程橡膠有限公司申請確認仲裁協議效力一案的請示的復函, 집속일 2020.3.26,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alp&Gid=c992522bc35bf6347c4e705b5159772dbdfb&EncodingName=

58)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59) 목영준, 전개서, p.293.

60) [2006] 民四他字 第34号, 最高人民法院關於是否裁定不予承認和執行英國倫敦“ABRA輪2004年12月28日租約”仲裁裁決的請示的復函, 집속일 2020.3.30, http://www.bbzcw.cn/page225?article_id=69

6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

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a호에 해당한다.⁶²⁾

중재인의 권한유월과 관련하여 ‘ICC가 내린 제13464/MS/JB/JEM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의 의견제청에 관한 회신’에서⁶³⁾ 신청인 Hemofarm DD, MAG국제무역회사, 피신청인 濟南永宁制藥有限公司(제남영녕제약회사, 이하 “제남제약”)은 1995년 海慕法姆制藥公司(해모법모제약회사, 이하 “해모제약”)와 합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쟁에 관해서는 ICC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서 중재로 해결한다고 합의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약정한 중재조항은 합자사항에 관한 분쟁만 규제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 제남제약과 해모제약 간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므로 합의한 중재조항으로 이를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CC가 내린 중재판정은 임대차계약의 분쟁에 관한 판정이어서 합자계약에 약정한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쟁은 ICC에 중재 신청을 하기전에 이미 중국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고 합자회사의 재산보전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ICC는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중국법원의 사법주권 및 사법관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민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에 의하여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판정을 내렸다. 해당 사례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으로써 권한유월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중재합의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4)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의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만약 중재합의가 없다면, 중재지의 법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된다.⁶⁴⁾

2010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일본상사중재협회 도쿄 07-11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의 의견제청에 관한 회신’에서⁶⁵⁾ 일본상사중재협회는 04-05호 중재판정에서 2005년 이후에 양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신월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신월화학”)의 “장기간 판매 및 구매계약서”(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에 대한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07-11호 중재판정에서 신월화학은 2005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앞선 04-05호 중재판정에서 이행청구했던 계약기간을 중복하였기 때문에 중재사항의 중복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07-11호 중재판정

62) 목영준, 전제서, p.293.

63) [2008] 民四他字 第11号, 最高人民法院關於不予承認和執行國際商會仲裁院仲裁裁決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4.1, <http://dqld.hljcourt.gov.cn/public/detail.php?id=9668>

64)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65) [2010] 民四他字 第32号, 最高人民法院關於不予承認日本商事仲裁協會東京07-11号仲裁裁決一案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4.7,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Gid=233217&keyword=%E6%AF%8D%E8%AF%AD&Search_Mode=like&Search_IsTitle=0

은 당사자의 중재합의에서 중재의 중국성을⁶⁶⁾ 위반하여 중재절차와 당사자합의가 부적합한 것이 된다. 이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 의거하여 07-11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은 “Bunge사”의 영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신청에 관한 회신⁶⁷⁾에서 2004년 Bunge사와 피신청인인 丰原粮油有限公司(풍원량유유한회사, 이하“풍원량유”)는 대두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의 해결은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한다고 하였다. 해당사례는 지정한 중재인이 스스로 회피한 경우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인 풍원량유에게 대체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중재인을 선임하였다. 이는 유지류거래업협회⁶⁸⁾ 「상소 및 중재규칙」 제1조 (f)항에⁶⁹⁾ 따라 중재기관의 새로운 중재인 지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에 위반되는 것으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 의거하여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중재절차에 대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중재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무에서 합의한 중재규칙 또는 중재법에서 중재절차와 관련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5) 중재가능성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호는 “중재판정의 대상이 집행국의 법률 하에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중국에서 2000년 이래로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단 1건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⁷⁰⁾ 2009년 ‘몽골 중재판정소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례’에서⁷¹⁾ 해당 외국중재판정은 신청자의 상속에 대한 내용이나, 중국 중재법 제3조에⁷²⁾ 의하면 “상속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중재판정은 “집행국의 법 하에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호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중국에서 혼인, 입양, 감호, 부양, 상속에 관한 분쟁 및 중국 법규상 행정적인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66) 원문에서는 ‘仲裁終局力原則’라고 표현.

67) [2006] 民四他字 第41号, 最高人民法院關於邦基農貿新加坡私人有限公司申請承認和執行英國仲裁裁決一案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04.03, https://www.pkulaw.com/en_law/0833678cdc80ed92bdfb.html?keyword=%e6%96%b0%e5%8a%a0%e5%9d%a1&flag=chinese

68) The Federation of Oils, Seeds and Fats Associations.

69) 유지류거래업협회 「상소 및 중재규칙」 제1조 (f)항: 당사자는 협회에게 보낸 중재합의에 관한 통지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체 중재인이 필요한 경우, 본 협회가 중재인을 지정해준다. 당사자는 협회의 중재인을 지정에 관한 통지를 발송 후 14일 이내에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하현수,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6, p.72.

71) 吳春英申請承認和執行蒙古國家仲裁庭仲裁裁決案, 접속일 2020.3.29, <http://www.gsfyj.com/428.html>

72) 중국 중재법 제3조. 이하의 경우 중재할 수 없다, ①혼인, 입양, 감호, 부양, 상속에 관한 분쟁; ②법에 따라 행정기관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분쟁.

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6) 공공질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집행국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⁷³⁾ 중국에서 2000년 이래로 이와 관련된 사례는 2건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건은 앞서 언급하였던 중재인의 권한유월과 관련한 ‘ICC 제13464/MS/JB/JEM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례’이다. 해당 사례에서⁷⁴⁾ 중국법원은 제남영녕제약과 합자기업 사이의 임차료 분쟁에 대한 보전처분과 판결에 대해 이미 행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이루어진 중재판정이므로 중국의 사법주권과 중국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뉴욕협약 제2항 b호의 사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재기구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재를 요청한 사건이 기판되는 사건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 건은 ‘2018년 Palmer의 영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례’이다.

2. 기타사유

기타사유로는 중재합의가 존재함에도 중국의 집행절차와 관련된 규정과 적합하지 않거나 집행이 거부된 경우, 그리고 뉴욕협약 제5조 이외의 조항을 위반 하였으므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거부된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 위 두가지 경우와 관련하는 중국법원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집행절차 위반

중국의 집행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승인 및 집행의 신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1987년 통지」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신청기간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1년 중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집행을 신청하는 기간은 개인의 경우 1년이고 양당사자 또는 기타조직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이다. 이후 2007년 「민사소송법」 수정판에는 집행 신청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⁷⁵⁾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신청기간이 초과되어 집행이 거부된 사례와 관련하여 2004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Vysanth의 영국 런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⁷⁶⁾ 신청인은 승인 및 집행 신청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여 1991년 「민사소송법」 제219조

73) 박종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에 관한 연구 - 공서양속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3, p.359.

74) [2008] 민사소송법 第11号, 最高人民法院關於不予承認和執行國際商會仲裁院仲裁裁決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2.28,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Gid=233217&keyword=%E6%AF%8D%E8%AF%AD&Search_Mode=like&Search_IsTitle=0

75) 万鄂湘·夏曉紅, “中國法院不予承認及執行某些外國仲裁裁決的原因”, 五大國際法評論第十三卷, 2010年 第2期, p.23.

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다고 판결하였다.

(2) 중재합의의 부존재

뉴욕협약 제5조 이외에 조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우선 뉴욕협약 제1조에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위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09년 최고인민법원은 ‘서브웨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제50/114T/00171/07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에 관한 회신’에서⁷⁷⁾ 신청인 서브웨이의 회사명은 중국어로 살백위(賽百味)로 통용되고 있어 피신청인인 북경살백위(薩伯威)의 회사명과 글자는 상이하지만 발음이 동일하다. 이에 서브웨이는 동일한 이름으로 문제삼아 중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피신청인인 북경살백위는 중국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사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이 사건의 중재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당사자가 중국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법인등록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뉴욕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⁷⁸⁾ 2006년 최고인민법원은 ‘한진해운의 영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⁷⁹⁾ 한진해운이 제공한 운임용선은 B/L에 적힌 선박임차계약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한진해운과 광동부흥유류유한회사 간에 유효한 서면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뉴욕협약 제2조를 위반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서 서면합의라 함은 당사자 간에 서명 이외에 적어도 서신이나 전보의 교환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⁸⁰⁾ 그러나 ‘미국 VOEST-ALPINE 회사(이하 “VA사”이라 한다)가 싱가포르 국제중재판정센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례’에서⁸¹⁾ 2004년 Nelson Lo(VA사 대표)와 진세기(江蘇省對外貿易經濟公司, 강소성 대외경제

76) [2004] 民四他字 第32号, 最高人民法院關於裁定不予承認和執行英國倫敦仲裁庭作出的塞浦路斯瓦賽斯航運有限公司與中國糧油飼料有限公司、中國人民財產保險股份有限公司河北省分公司、中國人保控股公司仲裁裁決一案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02.15, 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Gid=e1ce75994f23fc7abdfb

77) [2008] 民四他字 第47号, 最高人民法院關於賽百味國際有限公司申請承認和執行國際爭端解決中心國際仲裁庭作出的50/114/T00171/07号仲裁裁決一案的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4.15, <https://www.pkulaw.com/specialtopic/1d3ec9ac759f7c6b3037c5ae39e04969bdfb.html>

78) 뉴욕협약 제2조 제1항. 각 계약국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해결하기로 약정한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79) [2005] 民四他字 第53号, 最高人民法院關於對韓進船務有限公司申請承認和執行英國仲裁裁決一案請示的復函, 접속일 2020.4.17, <https://www.pkulaw.com/specialtopic/8f90a49ab9960ae2bae367af9c84eec0bdfb.html>

80)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서면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

81) [2008] 宁民五初字 第43号, 江蘇省南京市中級人民法院, 美國VOEST-ALPINE國際貿易公司民事裁定書, 접속일 2020.4.20, <http://sil.cupl.edu.cn/info/1026/1106.htm>

무역회사 대표, 이하 “강소외무”라 한다)가 계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후 Nelson Lo는 진세기에게 수정한 구매확인서를 발송하였다. 강소외무는 이 구매확인서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해당 중재판정에서 VA사의 위탁인 립걸(변호사 사무소)은 2004년에 강소외무에게 발송한 편지에 중재통지를 포함하였고 강소외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중재합의에 대하여 명확한 거부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서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소성고급법원은 VA사가 보냈던 중재통지서에서 명확히 회신기간이 없으므로 싱가포르 법률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판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받은 서신이나 진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법원은 부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⁸²⁾ 따라서 실무에서 중국기업과의 무역거래시 당사자 간에 서면 중재합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와 관련한 중국법원의 판결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1995년 중국 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20년간 중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신청은 대부분 집행되었다. 중국은 뉴욕협약을 엄격히 준수하여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승인하고자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제Ⅲ장에 언급하였다시피 중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에 관한 엄격한 보고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중국법원은 승인 및 집행의 거부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총 31건의 사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부사유는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이다.⁸³⁾ 따라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국의 법률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부사유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음이다.⁸⁴⁾ 따라서 중국기업들과 거래시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홍콩 및 대만의 중재판정에 대해서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및 홍콩, 대만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각

82) 쑤쇼링, 전계논문, p.511.

83)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절차상의 하자로 거부한 사례는 11건으로 32%를 차지하였다.

84)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음으로 거부한 사례는 7건으로 20%를 차지하였다.

지역의 중재 관련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및 대만, 홍콩 상호간에 체결한 협정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⁵⁾

중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이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엄격하게 이를 준수하고 있지만 뉴욕협약의 적용에 있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중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판단기준은 ‘중재판정을 내리는 국가’가 아니라 ‘중재기구의 소재지’이다. 이는 뉴욕협약의 판단기준 및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원칙과는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의 판단기준을 뉴욕협약의 판단기준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법원은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하여 뉴욕협약의 규정보다 조금 더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서 ‘서면합의라 함은 당사자 간에 서명 이외에 적어도 서신이나 전보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⁶⁾ 그러나 앞서 제Ⅲ장에 살펴본 ‘미국 VOEST-ALPINE 회사의 싱가포르 국제중재판정센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사례’에서 중국법원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받은 편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⁸⁷⁾ 이는 중국법원이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중재합의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한진해운의 영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한 회신’을 포함한 여러 사례를 통하여 중국법원이 중재합의의 심사하는 과정에 중재기구의 약정여부를 당사자 간의 분쟁의 초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⁸⁾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실제로 중국기업과 계약시 중재기구를 지정한 서명된 서면 중재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뉴욕협약 제5조에서 “집행국의 법원은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 집행국의 법원에게 자유재량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은 「1987년 통지」에서 외국중재판정은 뉴욕협약 제5조의 거부사유를 적용하는 경우,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뉴욕협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법원은 실제 외국판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뉴욕협약 제5조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것보다 실제상황을 고려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중재의 관할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67조

85) 하현수, 전계논문, p.149.

86)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서면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문 중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

87) 쑤소핑, 전계논문, p.511.

88) 崔學杰·楊馥宇, “商事仲裁司法監督的實証研究-以上海市第二中級人民法院商事仲裁司法監督的實踐爲視角”, 北京仲裁, 2010年 第1期, p.142.

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혹은 재산 소재지의 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통지」 제3조에서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요사무소의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이라고 규정하여 양법의 규정이 서로 상충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재의 관할법원에 대하여 양법의 규정을 통일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미,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뉴욕협약상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 제32호, 연세법학회, 2018.
- 김용길,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 박설아,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 - 집행가능성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7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8.7, p.69.
- 박종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에 관한 연구 - 공서양속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성성·하현수, “양안(兩岸)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아태경상저널』 제9권 제1호,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7.
- 신지연·이정표, “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쑤소링,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오원석·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 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
- 윤성민·김종철, “중국에서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 이정·박성호,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7.
- 장준혁,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9.
- 하현수, “양안사지(兩岸四地)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4.
- 하현수, “중국 법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

崔學杰·楊馥宇, “商事仲裁司法監督的實証研究-以上海市第二中級人民法院商事仲裁司法監督的實踐爲視角”, 北京仲裁, 2010.

杜新麗, “論外國仲裁裁決在我國的承認與執行-兼論紐約公約在中國的適用”, 「大觀周刊雜誌」, 2011.

万鄂湘·夏曉紅, “中國法院不予承認及執行某些外國仲裁裁決的原因”, 五大國際法評論第十三卷, 2010.

趙秀文, “非內國裁決的法律性質辨析”, 「法學期刊」, 2007.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China

Ying-Chun Lu
Choong-Lyong Ha
Na-Hee Han

The arbitration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resilience, speed, ease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oday's international business. As the world's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China's trade disputes are intensifying.

In 2017, China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ercial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t "One Belt, One Roa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 will become more active, with the issue of how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ecoming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South Korea and China maintained deep trade relation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concluding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inevitably increase trade disputes.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so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nalyze how foreign arbitration awards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China's access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87 was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However, since China has begun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rbitrators relatively lat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a.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scop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well as the legal basis and procedures for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and examines relevant cases and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the end, some issues and remedi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system in China were concluded.

Key Words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on-domestic arbitral awards, arbitration possibility